3) 쾌적한 보행환경

■ 쾌적한 보행환경				
정의	전체 행정구역 도로 길이 중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공간 비율			
2. 측정단위	백분율(%)	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	
- 목 적	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,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,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	
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	
- 고려 요소	- 보행자 전용길 - 자전거도로: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, 연석, 기타 이외 유시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설치된 자전거도로 -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: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, 연석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-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: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설치된 자전거도로 - 보행자 전용도로: 1차선 폭원은 최소 1.5m이상, 최대구배는 10%가 표준(계단의 경우 최대구배 50%까지 가능) - 자전거도로 : 1차선 폭원은 최소 1.5m이상, 곡률반경은 10m이상, 최대구배는 5%(제한 길이 100m)	 보행과 지전거 통행의 분리 보행로 폭 2.5미터 이상 확보 Barrier Free 및 Universal Design의 적용 차도 내 자전거 통로 설치 		

2.정책 및 제도

1) 제도적 장치

■ 제도적 장치			
1. 정의	지자체 조례 중 환경 관련 조례 및 규칙 비율		
2. 측정단위	백분율(%)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
- 목 적	오염이 심각한 도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, 오염원(大氣汚染源)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
- 고려 요소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
	- 교육·교통환경 - 에너지환경 - 도시 및 주거환경 -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- 대기환경 - 수질 및 수생태계 - 보건 - 토양환경 등	- 정책 및 제도 실현을 위한 조직·기구 조성 - 담당 공무원의 상시 근무 - 위원회의 설치 - 주민과의 연계(참여 조직 등)	